

외국사례

만약 돼지콜레라가 발생한다면!

지금부터 2년 이상전에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양돈계를 돼지콜레라가 날뛴 적이 있다. 당시 영국 왕국 덴마크도 예외는 아니어서 돼지콜레라 감염위험에 노출되었다. 다음은 덴마크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 때의 박멸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악의 사태

모년 모월 모일, 시각은 화요일 오전 9시. 지역 감독수의사는 최악의 예감이 현실로 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Linholm 정 국립수의국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어제 보낸 농장 샘플은 돼지콜레라의 의혹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이 사실은 수의국에 통보되었고, 농장은 이미 어제부터 공적인 감시하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중대사건으로 되어 있다. 돼지콜레라가 덴마크에서 발생한 것이 이것에서 증명되었다.

윤충근 팀장
축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위기관으로 되고, 발생지구의 지역 감독수의사와 함께 수의 감독관이 대책지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발생 농장에 대하여 살처분에 의한 박멸대책을 실시하고 감시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한다. 이 중 대한 사태를 구원할 수의사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 것이 지역 감독수의사로 구원단의 멤버를 모은다. 한편 경찰은 필요한 도로차단이나 입간판을 설치하는 콘트롤을 실시하여 수의국을 돋는다.

농장의 클리닝

경보 발령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국 국장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국립수의국이 최고 권

돼지콜레라 감염농장의 돼지 전두수는 즉각 살처분시키고 폐사돈은 특별제조된 차량으로 소각처리장으로 옮긴다. 농장은 세정소독시키고, 그 후 돼지 도

입은 빨라도 30일 경과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사이 감염농장은 어디에서 돼지를 도입하였는가 또는 어디로 납입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탐색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농장에서 생산출하된 고기는 폐기처분 시키고, 그 납입선에 해당하는 농장도 공공기관의 감시하에 넣어 돼지콜레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감염농장 바로 가까이에 양돈장이 있으면 그 농장의 돼지도 처분대상이 된다.

반경 3Km 지역과 반경 10km 지역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최저 반경 3Km 의 보호지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 안은 특별제한이 설정되어 있고, 보호지역에는 다음의 제한이 부과되어 있다.

- 모든 농장은 7일 이내에 지역 감독수의사에 의해 검사하고 지도에 등록시킨다.
- 돼지의 이동과 운반을 금지시킨다.
- 그 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폐사돈은 수의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이 지역을 나온 차량과 자재는 세척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농장은 완전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일부는 실처분 돼지에 대하여 일부는 운영손실에 대하여 지불된다. 공공기금으로는 완전히 운영손실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상의 부족부분에 관해서는 양돈생산 부과금기금과 도축연합으로부터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서는 세척소독 후 21일이 경과하면 처음으로 이 지역으로부터 돼지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지만 이 것은 특별한 조건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 보호지역 주변에는 감시지역이 설치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보호지역과 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7일 후에 돼지의 이동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가제한

유럽의 commission(위원회) 또는 권위기관은 물론 제한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부터 생체돈의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1997년 봄 유럽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시에는 독일의 바이에른주 전체와 네덜란드 대부분이 이 규칙에 기초하여 폐쇄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된 경우 생체돈의 이동에 관한 제한이 감시지역보다 큰 범위에 대한 생체돈의 취급금지가 도입되는 것도 현실문제로서 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 많은 나라들이 덴마크로부터 돈육수입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다.

경보해제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서 세척소독이 실시되고 나서 30일 경과후 처음으로 보호지역 농장의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실시되고, 이 혈액검사에서 돼지콜레라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돼지콜레라가 나타나는 경우 이제까지 기술한 수준이 되풀이 되는 것으로 된다.

공적인 감시

현실적으로 돼지콜레라 경보가 나오기 전에 돼지콜레라의 혹이 있는 농장은 공적인 감시 하에 넣는다. 이때 이 농장의 돼지는 주변으로부터 차단시키고, 특별한 허가에 따라서 도축장 또는 처리장에 돼지를 보내

●특집/돼지콜레라 박멸, 최종점검 8개월!

는 것이 가능하다.

돈사에 사람출입 그리고 농장에 차량출입 때에는 소독해야 한다는 특별한 요구가 부가된다. 예를 들면 돼지 운반차량이나 사료운반차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것과 접촉금지가 그것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적인 감시는 돼지콜레라 의혹이 시험소에서 무

효입증된 때에 겨우 해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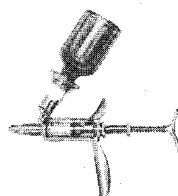
농장주에 대한 보상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농장은 완전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일부는 실처분 돼지에 대하여 일부는 운영손실에 대하여 지불된다. 공공기금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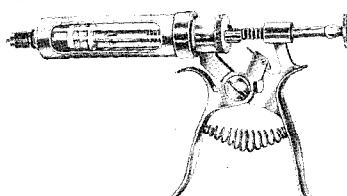
완전히 운영손실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상의 부족부분에 관해서는 양돈생산부과금기금과 도축연합으로부터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돼지콜레라 피해를 받은 모든 농장주에 대하여는 100%보상이 되는 것이다. <월간 양돈계 99.10>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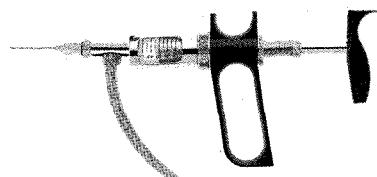
각 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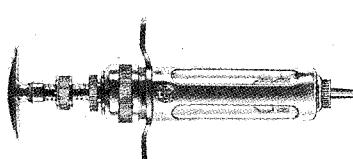
① FERROMATIC 주사기(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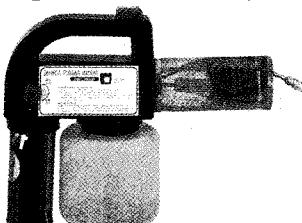
② REVOLVER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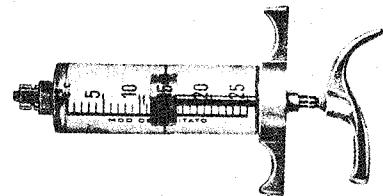
③ SOCOREX 연속주사기(1~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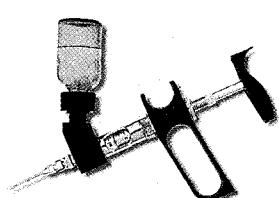
④ 철제주사기(10,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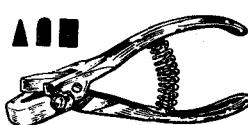
⑤ 휴대용 연막소독기(가스사용)



⑥ P.V.C주사기(반영구)10ml, 20ml



⑦ SOCOREX 연속주사기(병장학용)



⑧ 이각기(귀절단)



강화축산

주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3-11
☎ 305-2548, 374-7013
H·P : 011-9787-2548
FAX : (02) 308-1030